

의안번호	제 614 호
의 결 연 월 일	2021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1년 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번 호	614
-------------	-----

제출연월일 : 2021. 1.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지역 중심의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과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교육감 사무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 (안 제5조)

-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맞게 정비함 (안 제5조 제1호)
- 2)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일부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함 (안 제5조 제38호)
- 3)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의 노동인권교육 및 학생건강검사 규칙 제5조의2 단서규정에 따른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2개 미만 검진기관 선정승인과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함 (안 제5조 제39호 가~나목)
- 4) 교육장에게 위임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사무를 알기 쉽게 정비함 (안 제5조 제1호 자목 내지 타목, 안 제5조 제40호, 제41호)
- 5)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유무선망 구축 및 운영과 정보화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함 (안 제5조 제41호 바목)

- 6)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를 복무를 관리하는 기관학교로 위임함 (안 제5조 제31호 다목, 안 제6조 제9호, 안 제7조 제7호)
- 7)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 위임 사무 중 교육장에게 재위임되는 교육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함 (안 제5조 제37호)

나.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 (안 제6조)

- 1)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를 복무를 관리하는 학교로 위임 (안 제6조 제9호)

다.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 (안 제7조)

- 1)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를 복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위임 (안 제7조 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0. 11. 27. ~ 2020. 12. 16.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를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교육과정의”를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 · 관리 등 교육과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학교수업료와 입학금”을 “평생교육 등 교육 · 학예 진흥”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타목 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제25호 및 제2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1호다목 중 “보수 · 복무 · 근무성적평정”을 “보수 · 복무 · 겸직 허가 · 근무성적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3호 및 제37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 · 보건 · 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 · 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 · 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 사항

제5조제38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관할구역 내 공 · 사립 일반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
 - 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교수 · 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 다. 진로 · 진학 지도에 관한 사항
 - 라.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39.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 특수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 · 관

리에 관한 사항

가. 노동인권교육

나.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2개 미만 검진기관 선정 승인과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항

40.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 및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에 관한 지도·감독

41.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나.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관한 사항 및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

2)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

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

4) 청문

5)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6)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라.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학교급식법」 제18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

2) 「학교급식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3) 「학교급식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4) 「학교급식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5)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마.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바. 교육정보화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유·무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보화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9호 중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을 “보수·복무·겸직허가·근무성적평정”으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을 “보수·복무·겸직허가·근무성적평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
1. 공 · 사립의 <u>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u>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	1. ----- <u>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u> ----- ----- ----- -----
가. <u>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u>	가. <u>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 · 관리 등 교육과정</u>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u>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 · 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u>	다. <u>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u>
라. <u>학교체육 · 보건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u>	라. <u>학교체육 · 보건 · 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u>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u>교육 · 학예의 시설 · 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u>	바. <u>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 · 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u>
사. <u>학교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u>	사. <u>평생교육 등 교육 · 학예 진흥</u> ----
아. <u>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u>	아. <u>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 · 집</u>

현 행	개 정 안
<u>사항</u>	<u>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u>
<u>자.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차.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 및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카.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관한 사항 및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타.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장학지도 및 컨설팅장학</u>	<u><삭 제></u>
<u>2. 관할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와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u>	<u><삭 제></u>
<u>3. ~ 24. (생략)</u>	<u>3. ~ 24. (현행과 같음)</u>
<u>25.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u>	<u><삭 제></u>

현 행	개 정 안
<p><u>항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u></p> <p>가. <u>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u></p> <p>나. <u>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u></p> <p>다. <u>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u></p> <p>라. <u>청문</u></p> <p>마. <u>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u></p> <p>바. <u>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u></p> <p>26. 삭 제</p> <p>27. (생 략)</p> <p>28. 삭 제</p> <p>29. <u>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의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u></p> <p>가. <u>「학교급식법」 제18조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평가</u></p> <p>나. <u>「학교급식법」 제19조에 의한 출입 · 검사 · 수거 등의 사무</u></p> <p>다. <u>「학교급식법」 제21조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요청</u></p> <p>라. <u>「학교급식법」 제2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 징수</u></p>	<p>27.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u>마.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u> 30. (생 략) 3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 나. (생 략) 다.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u>보수</u> · <u>복무</u> · <u>근무성적평정</u> 32. (생 략) <u>33.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의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u> 34. ~ 36. (생 략) <u>37.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 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u> 가. 공립 고등학교 · 특수학교 교감 및 교사의 전보, 순회, 임지 지정, 겸임, 파견, 휴직, 복직, 명예퇴직 나. 공립 고등학교 · 특수학교 교감 및 교사의 직위해제, 의원 면직, 경징계(교사에 한함), 포	30. (현행과 같음) 31.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u>보수 ·</u> <u>복무 · 겸직허가 · 근무성적평정</u> 32. (현행과 같음) <u><삭 제></u> 34. ~ 36.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상, 성과상여금, 공무국외여행</u></p> <p><u>다. 공립 고등학교 · 특수학교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u></p> <p><u>라. 사립 고등학교 · 특수학교 교감 및 교사의 성과상여금</u></p> <p><u><신 설></u></p>	<p><u>38. 관할구역 내 공 · 사립 일반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u></p> <p><u>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u></p> <p><u>나. 교수 · 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u></p> <p><u>다. 진로 · 진학 지도에 관한 사항</u></p> <p><u>라.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u></p> <p><u>39.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u></p> <p><u>가. 노동인권교육</u></p> <p><u>나.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2개 미만검진기관 선정 승인과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항</u></p>
<p><u><신 설></u></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40.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 및 저소득층 교과 서 지원에 관한 지도·감독</u>
<u><신 설></u>	<u>41.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 술학교·특수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u> 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나.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관한 사항 및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따른 다음의 사항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 2)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 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 4) 청문 5)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6)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라.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학교급식법」 제18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 8. (생 략) 9.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u>보수</u> · <u>복무</u> · <u>근무성적평정</u> 10. · 11. (생 략)	2) 「학교급식법」 제19조에 따른 출입 · 검사 · 수거 등의 사무 3) 「학교급식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4) 「학교급식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 5)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u>마.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u> <u>점검에 관한 사항</u> <u>바. 교육정보화에 관한 다음의 사항</u> 1) 유 · 무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보화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 략)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 1. ~ 8. (현행과 같음) 9. ----- <u>보수</u> · <u>복무</u> · <u>겸직허가</u> · <u>근무성적평정</u> 10. · 11. (현행과 같음)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 1.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7.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u>보수·복무</u> · <u>근무성적평정</u>	7. ----- <u>보수·복무</u> · <u>겸직허가·근무성적평정</u>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관 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80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8조(교육감) ①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 · 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 · 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 · 도를 대표한다.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 · 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 · 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 · 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 · 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 · 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 · 학예의 시설 · 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 ·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 · 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6조(사무의 위임 ·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 · 출장소 또는 읍 · 면 · 동(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 · 출장소 또는 읍 · 면 · 동의 장을 지휘 · 감독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67호, 2016. 12. 13., 일부개정]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전문개정 2010. 6. 29.]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령 제198호, 2020. 1. 9., 일부개정]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⑥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⑦ 검진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⑧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6. 3. 4., 2020. 1. 9.>

[본조신설 2006. 1. 1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047호, 2020. 9. 22, 타법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6.>

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2. 18., 2010. 9. 1., 2013. 3. 2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 가.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초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다.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라. 중등학교 · 초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 · 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 가. 유치원의 원장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유치원의 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 · 교감자격기준과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 · 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5.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 가. 중등학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 ·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라.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마.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아.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한다) ·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 보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카. 영양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6.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 가. 유치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유치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7.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8. 「고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및 운영

9. 삭제 <2011. 12. 13.>
10.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박탈
1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마.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전환의 협의
- 바.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
12. 삭제 <2011. 12. 13.>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5. 삭제 <2011. 1. 24.>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17.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18.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20. 삭제 <2011. 1. 24.>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1.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대학·전문대학, 국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4. 해당 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
5. 「고등교육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만 해당한다.
6.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에 대한 승인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및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 ④ 교육부장관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⑥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른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⑦ 삭제 <2016. 3. 22.>

[제목개정 2013. 3. 23.]

□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6871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30조(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2.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전문개정 2011. 9. 30.]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9. 30.]

□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1024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 8. 12., 1988. 2. 24., 1991. 2. 1., 1991. 4. 23., 1992. 3. 28., 1992. 8. 25., 1994. 2. 17., 1994. 12. 23., 1999. 9. 30., 2001. 1. 29., 2005. 4. 15., 2007. 6. 28., 2008. 2. 29., 2008. 6. 5., 2012. 12. 4., 2013. 3. 23.>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의2. 삭제 <2013. 5. 31.>

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 8. 25., 1999. 9. 30., 2001. 1. 29., 2003. 3. 11., 2007. 6. 28., 2008. 2. 29., 2012. 12. 4., 2013. 3. 23.>

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 삭제 <2007. 6. 28.>

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

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6. 삭제 <2007. 6. 28.>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 8. 25., 1994. 12. 23., 1999. 9. 30., 2000. 12. 30., 2001. 1. 29., 2003. 3. 11.,

2008. 2. 29., 2013. 3. 23.>

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2. 삭제 <2007. 6. 28.>

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

설 1995. 5. 29., 1999. 9. 30., 2001. 1. 29., 2003. 3. 11., 2008. 2. 29., 2013. 3. 23.>

1. 삭제 <2007. 6. 28.>

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

2. 29., 1991. 2. 1., 1991. 4. 23., 1991. 8. 8., 1992. 8. 25., 1994. 2. 17., 1995. 5. 29.,

1996. 2. 22., 1997. 2. 25., 1999. 9. 30., 2001. 1. 29., 2007. 6. 28., 2008. 2. 29., 2008. 8.

27., 2011. 10. 25., 2012. 12. 4., 2013. 3. 23.>

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 삭제 <1999. 9. 30.>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4. 삭제 <2013. 5. 31.>

5. 삭제 <2013. 5. 31.>

6. 삭제 <2007. 6. 28.>

7. 삭제 <2013. 5. 31.>

8. 삭제 <2013. 5. 31.>

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

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 2. 1., 1995. 5. 29., 1999.

9. 30., 2001. 1. 29., 2008. 2. 29., 2011. 9. 6., 2012. 12. 4., 2013. 3. 23.>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전문개정 1982. 3. 11.]

□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충청북도조례 제4425호, 2020. 7.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삭제 <2020. 7. 10.>
5. 삭제 <2020. 7. 10.>
6. 삭제 <2020. 7. 10.>

제3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 교원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과 연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제9조(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 ①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충청북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대상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